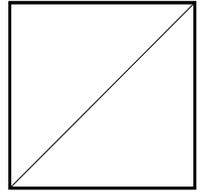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102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3. 18. (제 5 차)	

아이비케이연금보험(주)의  
보험업 허가조건 변경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은 성 수
제출 연월일	2020. 3. 18.

## 1. 의결주문

- 아이비케이연금보험(주)(이하 “IBK연금”)에 대한 보험업 허가조건 변경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 IBK연금은 보험업 허가에 부가된 허가조건외의 변경을 신청
  - 이에 보험업 허가조건 변경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한 결과, 변경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별지와 같이 승인하고자 함

## 3. 주요골자

### 가. 신청내용

- 아이비케이연금보험\*(주)(이하 “IBK연금”)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지연 등으로 허가조건 준수가 어려워짐에 따라 보험업 허가\*\* 조건의 변경을 신청(‘20.1.21.)

\* 설립 : 2010. 7. 9, 대주주 : 기업은행(100%), 대표이사 : 장주성

\*\* 보험업의 종류 : 생명보험업, 보험종목 : 연금보험(퇴직연금 포함)

- 현행 허가조건은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전제로 단계적으로 강화\*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기업 부담증가 우려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이 무산되어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지연

\*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적립금 비율: (‘15~‘19년) 50%↑ → (‘20~‘21년) 60%↑ → (‘22년 이후) 70%↑

- 이러한 가운데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높은 이직·퇴직률 등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으로 적립금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허가조건 준수가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

\* (‘16년) 59% → (‘17년) 56% → (‘18년) 54% → (‘19년) 53%

➡상기 사유를 고려하여 허가조건의 비율 산출기준을 “적립금”에서 “신규보험료”로 변경하고,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시행전까지는 현재와 같이 비율을 50% 이상으로 유지(의무화 시행 이후 70% 이상)

## 현행 허가조건 및 변경 신청안(案)

현행 허가조건	허가조건 변경신청안(案)
아이비케이연금보험(주)는 총 퇴직연금 보험의 <u>보험료적립금</u> 중 계약자가 중소기업인 퇴직연금보험의 <u>보험료적립금</u> 비율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0% (누적기준, 이하 같다) 이상, 2020년부터 2021년까지 60% 이상, 2022년부터 70% 이상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 당해 사업년도 신계약보험료 ----- ----- 수입보험료 비율을 70% 이상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가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년도까지는 수입보험료 비율을 50% 이상으로 적용한다.

### 나. 심사결과

- IBK연금이 신청한 허가조건 변경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
  - 현행 허가조건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변경 및 정당한 사유가 있어 허가조건 변경의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고,
  - 허가조건 변경을 반영한 사업계획이 합리적이고 이익시현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며,
  - 변경된 허가조건하에서 퇴직연금 등 보험사업 영위를 위한 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구비한 것으로 판단

### 다. 심사의견

- IBK연금이 허가조건 변경을 위한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함에 따라 IBK연금의 보험업 허가조건 변경을 별지와 같이 승인하고자 함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별첨】** 참조

(별 지)

아이비케이연금보험(주)의 보험업 허가조건 변경 신청건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험업 허가조건 변경을 승인한다.

- 다 음 -

- 아이비케이연금보험(주)의 보험업 허가에 부가된 조건인 “아이비케이연금보험(주)는 총 퇴직연금보험의 보험료적립금 중 계약자가 중소기업인 퇴직연금보험의 보험료적립금 비율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0%(누적기준, 이하 같다) 이상, 2020년부터 2021년까지 60% 이상, 2022년부터 70% 이상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를

“아이비케이연금보험(주)는 총 퇴직연금보험의 당해 사업년도 신계약보험료 중 계약자가 중소기업인 퇴직연금보험의 수입보험료 비율을 70% 이상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가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년도까지는 수입보험료 비율을 50% 이상으로 적용한다.”로 변경한다. 끝.

## 【별 첨】

# 관련 법규

## □ 보험업법

**제4조(보험업의 허가)** ①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
  - 가. 생명보험
  - 나. 연금보험(퇴직보험을 포함한다)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 2.~3. (생략)
- ② ~ ⑥ (생략)
- ⑦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종목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관
2. 업무 시작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3. 경영하려는 보험업의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이하 "기초서류"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6조(허가의 요건 등)** ①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외국보험회사 및 제3항에 따라 보험종목을 추가하려는 보험회사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금을 보유할 것
2.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고 그 경영하려는 보험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物的) 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한 업무와 관련된 전문 인력과 물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으며, 건전한 경제 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② ~ ⑦ (생략)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승인의 세부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자본금 또는 기금)** ① 보험회사는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함으로써 보험업을 시작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가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종목의 일부만을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자본금 또는 기금의 액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 □ 보험업법시행령

**제9조(허가신청)** ① 법 제5조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자본금 또는 기금에 관한 사항
5. 시설, 설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
6. 허가를 받으려는 보험종목

② 법 제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를 말한다.

③ 법 제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외국보험회사를 제외한 주식회사 또는 상호회사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외국보험회사를 제외한 주식회사 또는 상호회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취급하는 보험종목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발기인회의의 의사록

나. 임원 및 발기인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다. 합작계약서(외국기업과 합작하여 보험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마.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바. 주주(상호회사의 경우에는 사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소유 주식 수(상호회사의 경우에는 출자지분)를 적은 서류

사. 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허가 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2. (생략)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2개월(법 제7조에 따라 예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실지조사에 걸린 기간은 통지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제10조(허가의 세부 요건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전문 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으려는 보험업에 관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보험 전문 인력과 보험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갖추는 것
2. 허가를 받으려는 보험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요한 전산설비를 구축하고 사무실 등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

②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라 그 업무와 관련된 전문 인력과 물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손해사정업무
2. 보험계약 심사를 위한 조사업무
3.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한 보험사고 조사업무
4. 전산설비의 개발·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
5. 정보처리 업무

③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이 지속적인 영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고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 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2.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데 드는 자본 등 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절할 것
3. 사업방법서가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에 적절한 내용일 것

④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는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⑤ ~ ⑨ (생략)

**제12조(보험종목별 자본금 또는 기금)**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험종목의 일부만을 취급하려는 보험회사가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종목별 자본금 또는 기금의 액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생명보험: 200억원
2. 연금보험(퇴직보험을 포함한다): 200억원
3. ~ 14. (생략)

②~③ (생략)

## □ 보험업감독규정

**제2-2조(허가절차의 구분)** 보험업 허가의 절차는 예비허가와 허가로 구분하며, 각각의 절차는 별지 제2호와 같다.

**제2-3조의2(사업방법서의 기재사항)**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작성하는 사업방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험업의 영위 지역, 영위하는 보험종목, 피보험자 또는 보험목적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9. 12. 18.>
3. 보험금액과 보험기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피보험자 또는 보험목적의 선택과 보험계약체결의 절차에 관한 사항
5. 보험료의 수수, 보험금의 지급과 보험료등의 환급에 관한 사항
6. 재보험의 수수에 관한 사항
7. 보험계약에 대한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에 관한 사항
8. 보험약관의 규정에 의한 대출에 관한 사항
9. 보험금액·보험종류 또는 보험기간 등 보험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보험목적의 위험상태와 검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보험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정하도록 한 사항

**제2-4조(허가신청 및 심사 등)** ① 보험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내지 제4호의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제2-5조(서류의 보완 등)** ① 금융위는 예비허가 또는 허가 심사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허가신청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시 부과된 조건이 있는 경우 허가신청인은 그 조건을 이행한 결과를 5영업일 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보험업의 허가에 관한 심사기준)** ①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③~④ (생략)

<별표 2>

인력·물적시설의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인력

허가를 받고자 하는 보험업을 영위함에 있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확보할 것

-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법감시인
- 나. 법 제1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계리사
- 다. 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무 수탁자. 다만, 허가 받고자 하는 보험업이 손해사정에 관한 업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 라. 전산설비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전산전문인력
- 마. 그 밖에 영업·계약·보전·보험금지급 등 보험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 물적시설

- 가. 허가받고자 하는 보험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 등 영업시설을 구비할 것
- 나. 제3호의 전산설비를 갖추어 것. 다만 전산설비의 적정여부는 보험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판단함
- 다. 전산설비 등 주요 물적시설의 관리·운영 등과 관련하여 영 제10조제8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전산설비

가. 전산기기에 관한 사항

심사기준	구비사항
(1) 하드웨어(H/W)는 당해 보험사업 영위에 적합한 처리용량 및 신뢰성을 갖추고 있을 것	(가) 허가신청한 보험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부합하는 시스템별 메모리, 중앙처리장치, 디스크 용량 구비 (나) 각종 서버 구비 : 메인서버, 통신서버, 방화벽서버, 웹서버(인터넷서비스 계획시) 등 (다) 근거리통신망(LAN) 설치 및 사업장간 네트워크 구비
(2) 하드웨어(H/W)에 대한 백업(backup)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가) 중앙처리장치, 주기억장치 등 주요 본체장비에 대한 예비 확보 (나) 통신제어장치의 예비 확보 (다) 통신회선의 이중화·우회화
(3) 장애발생시 보험가입자 등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성능의 전산기기를 구축할 것	(가) 시스템장애 복구시 데이터 정합성 유지를 위한 장치(시스템) 구비 (나) 시스템 및 각종 서버의 다중화, 네트워크의 이중화 장치 구비 (다) 백업시스템(Backup System) 구비

#### 나. 전산기기 운영에 관한 사항

심사기준	구비사항
(1) 보험사업의 원활한 영위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을 것	(가) 계약 및 영업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나) 관리지원 및 자산관리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다) 경영 및 모집조직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2) 전산자료 관리방안이 적정할 것	(가) 액세스 권한 및 오퍼레이션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1) 비밀번호, 식별코드 등의 등록·변경관리자 지정 2) 액세스 실패기록 소프트웨어 구비 3) 임의조작 등 부정사용 방지대책 마련
(3) 각종 전산자원의 장애 및 처리능력 저하로 인한 보험가입자 보호대책을 갖출 것	(가) 시스템장애 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복구대책 및 복구절차 등 비상계획 수립
(4) 보안시스템 등 감시운영 체계를 충분히 갖출 것	(가) 전산시스템의 운용, 시스템개발·변경, 중요정보사항에 대하여 해킹 등의 방지를 위한 이중 방화벽(fire-wall) 등 보안시스템 설비 (나) 데이터 인증 및 암호화 등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다중화구조의 구비

#### 다. 전산기기 설치환경에 관한 사항

심사기준	구비사항
(1) 전산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 재해발생 등의 가능성이 적은 곳에 위치할 것	(가) 환경 1) 전산시스템 관련업무 전용구역 마련 2) 화재, 공기오염, 진동에 대한 피해 예방설비 구비 3) 피뢰기 설치 (나) 구조 1) 건물의 중량, 적재하중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2) 전산실 등의 구조 및 내장, 설비 등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될 것	(가)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 설치 (나) 항온항습장치 설치 (다) 화재경보 및 자동소화장치 설치
(3) 전산실에 대한 보안대책방안이 적정할 것	(가) 침입감지·경보장치 구비 (나) 다중출입통제장치 설비 1) 인터폰, 자기카드·아이시(IC)카드, 비밀번호 입력장치 등 출입관리 설비 구비

#### 4. 인력·물적 시설의 외부위탁에 대한 특례

법 제6조제1항제2호단서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외부에 위탁한 경우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3>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제2-6조제2항 관련)

가. 사업계획서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성 있게 작성될 것

- (1) 경영목표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영전략이 마련되어 있을 것
- (2) 사업계획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추정이 이루어졌으며, 시장상황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 (3)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추정재무제표가 작성되었으며, 추정 영업손익·영업비용의 증감에 있어 일관성이 유지되고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

나. 지급여력비율 100분의 100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

다. 나목의 지급여력비율 유지 및 사업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금은 차입(후순위채무 포함)으로 조달하여서는 아니되며, 조달자금의 출처가 명확할 것

라.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 (1) 이사회구성 계획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이사회 구성방법에 부합할 것
- (2)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구성 등의 지배구조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3) 이사회와 경영진의 관계, 이사회 구성 및 운영방향,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등이 투명하고, 보험소비자 또는 주주 보호와 재무 및 영업의 건전성 유지에 적합할 것
- (4) 임직원의 법규준수, 위험관리 및 임직원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적절한 감독 및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 (5) 준법감시인의 업무상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이사회 등 회의 참석 및 자료 접근권이 보장되어 있을 것
- (6) 준법감시인,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등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것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24조(내부통제기준)** ①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그 자회사등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3.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사회, 임원 및 준법감시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
  4.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지원조직
  5.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
  6.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7. 임직원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의 보고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을 포함한다)
  8.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
  9.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
  10.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11.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의 제작 및 내용과 관련한 준수사항
  1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직원 겸직이 제11조제4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평가·관리
  13.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금융회사(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는 제외한다)는

내부통제기준의 운영과 관련하여 최고경영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내부통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운용함에 있어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1. 내부고발자 제도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

나.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 보호조치

다.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회사에 제보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불이익 부과

2. 위법·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명령휴가제도 도입 및 그 적용 대상, 실시주기, 명령휴가 기간, 적용 예외 등 명령휴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

3.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에 대한 사항

4.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

5. 영업점 자체점검의 방법·확인사항·실시 주기 등에 대한 사항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이하 "자금세탁행위등"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자문업자는 제외한다)

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

나. 자금세탁행위등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 또는

외부전문가가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독립적 감사체계의 마련 및 운영

다. 소속 임직원이 자금세탁행위등에 가담하거나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임직원의 신원사항 확인 및 교육·연수

③ 금융회사는 영 제19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내부통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지원조직을 구성·유지하여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본인만으로 내부통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④ ~ ⑦ (생략)

<별표 3>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제11조제2항 관련)**

구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2. 해당 금융회사가 보험회사인 경우	<p>가.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모집 종사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p> <p>나. 다음의 보험계리업무와 관련한 업무처리기준 및 세부절차, 관련 기초통계자료의 보관, 내부 검증절차 및 검증기준, 임직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품개발 관련 업무</li> <li>2) 최적기초율 산출 관련 업무</li> <li>3) 계약자 배당 관련 업무</li> <li>4) 실제사업비 배분 관련 업무</li> <li>5) 기타 회사가 정하는 계리업무</li> </ol> <p>다. 보험금 지급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p> <p>라. 보험사기행위 예방 및 보험리스크 관리를 위해 계약심사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p> <p>마. 대출금리의 산정 및 운용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p>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보험과	보험감독국
연 락 처	02-2100-2945	02-3145-7450